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89
----------	-------

발의연월일 : 2019. 11. 14.

발의자 : 손혜원 · 강석진 · 경대수  
김태흠 · 김현권 · 박완주  
박주현 · 손금주 · 오영훈  
윤준호 · 이양수 · 정운천  
황주홍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8조제2항, 제20조, 제31조제4항, 제35조제2항제2호)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대납(代納)하게”를 “대신 납부하게”로 한다.

제20조 중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을 “과오납금(過誤納金)을 되돌려줄 것을”로, “환급하여야”를 각각 “되돌려주어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감독상”을 “감독을 위하여”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대납하지”를 “대신 납부하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